##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64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임오경·서영교·윤후덕

박 정・한민수・문대림

김재원 • 박수현 • 진선미

김현정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학원설립·운영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·학원·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학원설립·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·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학원설립·운영자 및 교습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」 제14조제1항의 범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으로부터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이용하는 학원·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학원설립・운영자 등의 책	제4조(학원설립・운영자 등의 책
무) ① ~ ③ (생 략)	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학원설립・운영자 및 교습
	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
	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1항
	의 범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
	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
	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
	으로부터 학습자를 보호하기
	위하여 학습자가 이용하는 학
	원·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
	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
	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